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격안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1호,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개의·의결 조건, 수당·여비 지급,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8조 개정)
- 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개의·의결 조건, 수당·여비 지급,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8조의2 신설)
- 다.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보고해야 할 판매실적·절차, 수탁사업자가 성과 평가 시 포함해야할 사항·절차와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시 포함해야할 사항·절차를 규정(제12조의2 신설)
- 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 임기, 연임 제한, 소집·개의·의결조건,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3조의2 신설)
-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평균가격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의 경락가격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이지만, 가락시장에서 경매되지 않거나 경매규모가 적어 조사가 곤란한 품목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협동조합, 시·도 등에서의 매입가격 등으로 하고, 평균가격의 산출기간, 세부 산출방식, 유통비용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신설(제14조의3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처와 협의 중
-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중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5조제4항”을 “법 제5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을 “제1항에서 제7항까지에서 정한”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① 법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제35조의3 각 호의 사유 중 제5호의 사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임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제35조의3 각 호의 사유 중 제5호의 사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비축농산물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축사업 대상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

2. 품목별 비축 및 판매계획

3. 비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수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비축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비축 및 방출실적

2. 공급받은 자의 판매실적

3. 배분의 적정성 분석

4. 수급안정 효과 분석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수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농산물을 공급받아 직접 가공한 뒤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업체(상호)명

2.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장소재지

4. 품목

5. 판매량 및 판매일자

6. 업종별 판매처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법 제15조의2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심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u>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u> 1. ~ 4. (생략)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u>법 제5조의4제3항</u> ----- -----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u>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u> <u>② (생략)</u>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u>① 법 제5조의4제4항</u> ----- ----- ----- <u>② (현행과 같음)</u>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u>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u>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 <u>① 법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u> <u>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⑥ 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제35조의3 각 호의 사유 중 제5호의 사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평균가격의 산정)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의 경락가격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한다.

2. 가락시장에서 경매되지 않거나 경매규모가 적어 제1호의 가격으로 조사하는 것이 곤란한 품목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협동조합, 시·도 등에서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곤란한 품목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가격의 산출기간, 세부 산출방식, 유통비용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
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
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
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
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
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수 있다.

⑦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
촉에 관하여는 영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제35조의3 각
호의 사유 중 제5호의 사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서 제7항까지에서 정
한 -----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제8조의2(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의8
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의 위원장 2명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이 직무
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대행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다만, 공무원은 임기를 적용

<신 설>

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제35조의3 각 호의 사유 중 제5호의 사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비축용농산물관리운영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축사업 대상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
2. 품목별 비축 및 판매계획
3. 비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수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축용농산물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비축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비축 및 방출실적

2. 공급받은 자의 판매실적
 3. 배분의 적정성 분석
 4. 수급안정 효과 분석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수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농산물을 공급받아 직접 가공한 뒤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업체(상호)명
 2.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장소재지
 4. 품목
 5. 판매량 및 판매일자
 6. 업종별 판매처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신 설>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법 제15조의2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신 설>

때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제35조의3 각 호의 사유 중 제5호의 사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3(평균가격의 산정)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서울

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의 경락가격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한다.

2. 가락시장에서 경매되지 않거나 경매규모가 적어 제1호의 가격으로 조사하는 것이 곤란한 품목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협동조합, 시·도 등에서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곤란한 품목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가격의 산출기간, 세부 산출방식, 유통비용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2245